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 확대)
- 나.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(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 추진)
- 다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(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)
- 라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변경)
- 마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배출권 보유한도 확대)
- 바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장조치 기준 변경)
- 사.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)
- 아. 거래소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(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)
- 자. 금리·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유 관련 내용 개선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6/14 개정 · 2023/6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의 효율적 시장조성 등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가가격단위를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 확대(제65조 제2항 제3호)
 -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를 0.1원에서 0.5원으로 상향
 - 잔존만기가 2년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지표종목 운영기간(통상 6개월)중에도 0.5원 적용
 - 만기에 따른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 및 정비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6/29 개정 · 2023/7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품 거래수요를 반영하여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을 추진하고, 주식선물 · 옵션 기초주권의 선정 · 제외기준 및 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
-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가지수 · 주식 · ETF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 대량거래, 주식선물 · 옵션의 호가 수량한도 세분화 등 추진 및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(제5조의4, 제7조, 별표6)
 -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을 ‘월요일 결제주거래’로, 기존의 목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을 ‘목요일 결제주거래’로 하고, 그 밖에 거래개시일, 거래기간, 최종거래일, 종목코드 등 필요사항 규정 및 조문 정비

구분	월요일 결제주거래	목요일 결제주거래
거래개시일	월요일(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)	목요일(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)
최종거래일	월요일(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)	목요일(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)
거래기간	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종거래일까지. 다만, 거래개시일이 곧 최종거래일이 되는 경우 미상장	
양자 간 중복방지	1) 최종거래일이 이미 거래개시 중인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미상장 2) 양자 간 상장개시일과 최종거래일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요일 결제주거래만 상장	
종목코드	AF	09

- 기초주권 선정기준 개선 및 선정시기 확대(제8조)
 - 기존의 안정성 기준, 유동성 기준, 시가총액 기준을 대표 주가지수 구성종목 여부로 일원화 및 기초주권 선정시기를 확대(연 1회→ 연 2회)하여 다양한 시장수요 적시 충족 및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
 - 코스피200지수 또는 코스닥 글로벌지수의 구성종목이거나 그에 준하는 주권일 것

개정 전	개정 후
안전성기준(제8조 제1항 제1호, 제6항 제2호)	코스피200지수 또는 코스닥 글로벌지수의 구성종목이거나 그에 준하는 주권
유동성기준(제8조 제1항 제2호, 제3항~제5항)	
시가총액 기준(제8조 제1항, 제2항)	
연 1회 기초주권 선정(제8조 제1항, 선정기준일은 매년 4월의 마지막 날)	연 2회 기초주권 선정(제8조 제2항, 선정기준일은 코스피200선물거래 6월 종목 또는 12월 종목의 최종결제일)

- 기초주권의 선정시기를 코스피200지수 정기변경 시기(KOSPI200선물 6월 및 12월 결제월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)와 연동

□ 기초주권 제외기준 개선(제8조의2)

- 원칙적으로 기초주권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유지·제외기준으로 사용하되, 코스닥 글로벌지수 구성종목 여부 기준의 경우에는 종목 편출입이 빈번한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요건 설정
 - 코스닥 글로벌지수에 해당되지 않거나, 코스닥 대형주지수 미포함인 경우에만 기초주권에서 제외
 - 유동성관리상품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요건(유동성관리상품 지정여부) 및 파생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건(단기과열종목 지정 3회 이상)을 삭제

□ 기초주권 선정 및 제외의 근거 조문 명확화(제8조, 제8조의2, 제8조의3)

- 제8조는 기초주권 선정, 제8조의2는 기초주권 제외의 근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제8조의3은 삭제

□ 주가지수·주식·ETF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허용(제67조의4, 제69조, 제71조, 제72조의2, 제72조의3, 별표 26)

- 투자자의 롤오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가지수·주식·ETF선물 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 거래를 허용하고, 그 밖에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

[주가지수·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]

상품 구분	신청시간	가격범위	신청수량
코스피200·미니코스피200·코스닥150·KRX300선물스프레드	08:45~15:35	당일 상·하한가 범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	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
섹터지수·해외지수 선물스프레드	09:00~15:35		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
주식선물스프레드	09:00~15:35		20계약 이상 기초주권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합계 이하
ETF선물스프레드	09:00~15:35		20계약 이상 기초ETF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합계 이하

□ 주식선물·옵션 호가수량한도 세분화(별표 17의2)

— 주식선물·옵션 호가수량한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제한 해소

개정 전	개정 후
1,000계약, 2,000계약, 10,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	1,000계약, 2,000계약, 5,000계약, 10,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

다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(2023/6/15 개정·2023/6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정부의 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(제5조)

— 매매거래기간을 기존 6월말(이의신청 시 8월 10일)에서 8월말로 변경

라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6/26 개정·2023/6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LIBOR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달러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 유지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함

— 달러이자율스왑거래의 변동금리로 사용되는 USD LIBOR가 2023년 7월부터 산출 중단 예정

2) 주요 내용

□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변경

— 달러이자율스왑의 정산금리 산출에 적용되는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정보 변경 (제33조 2호, 별표 1의2)

• (기존) LIBOR IRS, FFER, FFER OIS, Basis Swap → (변경) SOFR, SOFR OIS 금리

— 조정이자와 지연이자 산출시 적용되는 정산금리의 변경 (제38조 제2호, 제101조 제2호)

• (기존) FFER → (변경) SOFR

- LIBOR 대체금리 적용시 휴무일에 따른 이자지급 방법 변경(제39조 3항)
 - 이자지급일이 거래소 휴업일이거나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차액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 수수일을顺延
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(제78조)
 -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존 세칙 조문(제78조, 제79조)의 내용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
- 경매 호가부호 변경 관련 수정(제85조)
 - 경매 호가부호 변경에 맞추어 기존 조문 문구 수정
- LIBOR 대체금리 적용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산출 방식 변경(별표 2)
 - SOFR OIS 정산금리 기반으로 선도금리를 산출하고, 할인계수의 산출에 필요한 정산금리 및 금리기간을 변경
 - SOFR 및 USD SOFR OIS로 정산금리를 변경
- 과거 데이터 사용시 탄력 적용 조항 신설(별표 5 3호)
 - 신규 정산금리인 SOFR OIS 금리의 과거 데이터 부족으로 초기 변동성 산출시 사용할 과거 금리 차분 데이터를 현행 1,250개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함

마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3/6/27 개정 · 2023/6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보유한도를 확대하여 시장조성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 (제40조의2)
 - (시장조성자) 300만톤 → 600만톤
 - (거래중개회원) 50만톤 → 100만톤

바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3/6/7 개정 · 2023/6/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서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- 회원 등이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시 징계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, 위반행위 신고의 양성화 및 회원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장조치 기준 변경(제3조의7)
 -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경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상장 종목의 전일의 증가가 되는 가격을 상장일의 시가가 되도록 규정 정비
- 자진신고시 징계 감면 근거 신설(제16조 제3항)
 - 위원회가 위법·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회원 등이 자진신고한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명문화
- 감경의 중복적용 관련 조문 정비(제16조 제4항)
 -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(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에 대한 감경)과 제16조 제2항(내부통제 적정성을 고려한 감경)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되, 제16조 제3항(자진 신고 감경)의 경우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
 - (세칙 제16조 제1항) 최근 2년 이내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된 회원의 경우
 - (세칙 제16조 제2항) 내부통제적정성 고려
 - (세칙 제16조 제3항) 위원회가 위법·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 회원 등이 자진신고한 경우
- 자진신고시 회원제재금 감경방법 구체화(별표 1 제3호 가목)
 - 회원제재금 징계에 대한 자진신고 감경시 제재금 부과금액 구간을 한 단계 이상 하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

- 위법·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서식 신설(별지 제20호 서식 신설)
 -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 등이 위법·위규 사실을 거래소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20호 서식을 이용하여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

사.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2023/6/30 개정 · 2023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처리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(제14조의2)
 - 실질심사를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,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 마련

아. 거래소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(2023/6/26 개정 · 2023/7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접속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 - 장외청산시스템 → TR-거래확인시스템

2) 주요 내용

-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 관련 내용의 삭제(제2조 제4호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)
 - 변경된 거래확인시스템에서는 조기종료 및 당사자 변경 업무 기능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
 - 기존과 동일하게 장외청산시스템에서 관련 업무 기능을 유지
- 시스템 접속방식의 변경(제8조 제1호)
 - 시스템 접속방식이 WEB 화면을 통한 접속 방식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

- 거래확인 횟수의 변경(제11조 제1항)
 - 거래 당사자간 거래확인을 위한 승인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

자. 금리·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3/6/21 개정·2023/6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유 관련 내용 개선(제12조)
 -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업무 수행 중 법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시장조성대가를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등
- 시장조성자의 의무조정 가능 사유 추가(별표 3)
 - 신규 시장조성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시장조성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
-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 개선 등(별표 4)
 -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상품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연계상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상품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
 - 신상품 등의 경우 전체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상품 일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시장조성상품 거래시 일정수준의 연계상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식 신설
 - 상품군별 지급한도를 시장조성자 1사당 상품별 지급한도 등으로 개선
 - 시장조성자 별점산출 시점을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전으로 앞당겨 조정하고, 위험선물의 개시호가 지연시간의 적용한도(5분)를 신설
- 시장조성자 표준계약서 정비(별지 제2호 서식)
 -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신고 및 자전거래방지조건 부여 의무를 추가
 -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계약해지여부 결정시까지 시장조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